

서울특별시교육청 응급처치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I. 회부경위

1. 의안번호 : 제2170호
2. 발 의 자 : 최기찬 의원
3. 발의일자 : 2020. 2. 4.
4. 회부일자 : 2020. 2. 9.

II. 제안이유

- 서울시 관내 학교 학생과 교직원의 응급처치교육 지원을 통하여 응급 사고에 대한 대응능력 향상 및 응급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함.

III. 주요내용

1.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를 규정함(안 제2조).
2. 응급처치교육 지원에 관한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을 시행하도록 교육감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3. 학교의 응급처치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응급처치교육 지원 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함(안 제4조),

4. 응급처치교육 역량강화를 위하여 교직원에게 충분한 연수기회를 부여하도록 하고 의료기관 등에서 응급처치교육을 받게 할 수 있도록 마련함(안 제5조)
5. 학교에 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 등을 갖추도록 노력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6조).

IV. 참고사항

1. 관계법령 : 「학교보건법」 및 같은 법 시행령
2.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참조
3. 기타사항 :

○ 입법예고(2021. 2. 16. ~ 2. 23.) 결과 : 의견 없음.

V. 검토 의견(수석전문위원 김창범)

1. 제안경위 및 주요내용

- 동 조례안은 2021년 2월 4일 최기찬 의원에 의해 의안번호 제2170호로 발의되어 2021년 2월 9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 동 조례안은 서울시 관내 학교 학생과 교직원에 대한 응급처치 교육 지원을 통해 응급사고에 대한 대응능력을 향상하고 응급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자 발의되었습니다.

2. 주요 검토의견

가. 조례 제정 취지에 대한 검토

- 현행 「학교보건법」 제9조의2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는²⁾ 교육부장관과 학교의 장이 매년 학생과 교직원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을 포함한 보건교육을 실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구체적인 응급처치교육의 계획·내용 및 시간 등은 [붙임] 참고).

1) 「학교보건법」 제9조의2(보건교육 등) ① 교육부장관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모든 학생들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을 포함한 보건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건교육의 실시 시간, 도서 등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한다.

②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의 장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장은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교직원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의 장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과 연관된 프로그램의 운영 등을 관련 전문기관·단체 또는 전문가에게 위탁할 수 있다.

2) 「학교보건법 시행규칙」 제10조(응급처치교육 등) ① 학교의 장이 법 제9조의2제2항에 따라 교직원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이하 “응급처치교육”이라 한다)을 실시하는 경우 응급처치교육의 계획·내용 및 시간 등은 별표 9와 같다.

② 학교의 장은 응급처치교육을 실시한 후 해당 학년도의 교육 결과를 다음 학년도가 시작되기 30일 전까지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학교의 장은 공공기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제2조제2항의 연수원 중 교육감이 설치한 연수원 또는 의료기관에서 교직원으로 하여금 응급처치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소정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그리고 이에 따른 「학교 안전교육 실시 기준 등에 관한 고시」는 응급처치교육을 각급 학교별로 아래의 [표1]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표1] 학년별 학생 안전교육의 시간 및 횟수

(단위: 단위활동, 차시)

구분	생활안전교육	교통안전교육	폭력예방 및 신변보호교육	약물 및 사이버 중독 예방 교육	재난안전교육	직업안전교육	응급처치교육
교육 시간	유치원	13	10	8	10	6	2
	초등학교	12	11	8	10	6	2
	중학교	10	10	10	10	6	3
	고등학교	10	10	10	10	6	3
횟수	학기당 2회 이상	학기당 3회 이상	학기당 2회 이상	학기당 2회 이상	학기당 2회 이상	학기당 1회 이상	학기당 1회 이상

- 참고: 1. 학력이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 및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재외 한국학교와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특수학교의 경우는 인정되는 학력에 해당하는 학교급에 맞추어 실시한다.
2. 학교안전교육 실시 시간의 단위는 유치원은 교육과정 고시에 따른 단위활동이며, 초·중등 학교는 교육과정 고시에 따른 차시이다.
3. 학교급별 제시하는 안전교육 시간은 학년별(유치원은 연령별) 실시해야 할 시간을 말하며, 횟수는 영역별 안전교육 시간을 학기당 제시된 횟수 이상으로 분산·실시해야 함을 말한다.
4. 학교(유치원 포함) 운영 성격 및 지역적 특성에 따라 총 이수시간의 범위 내에서 안전 영역별 이수 시간을 자율적으로 조정·운영(20% 범위 내, 소수점은 올림처리)할 수 있다.
5. 재난안전교육은 재난 대 훈련을 포함하여 실시하여야 하며, 각종 재난 유형별 대비 훈련을 달리하여 매 학년도 2종류 이상을 포함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6. 1단위활동 및 1시간(차시)의 수업 시간은 교육과정을 따르되, 기후 및 계절, 학생의 발달정도, 학습 내용의 성격, 학교 실정 등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편성·운영할 수 있다.

○ 이와 더불어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4조는³⁾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로 하여금 「학교보건법」 제15조에 따른 보건교사, 「유아교육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교사에게 구조 및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을 받도록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최근 질병관리청이 개최한 「제9차(2020년도) 급성심장정지조사 심포지엄」에서도 심폐소생술 교육 경험에 따른 실제 일반인의 심폐소생술 시행률이 증가하고 있음을 발표하는 등 응급처치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한 바 있습니다.⁴⁾

3)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4조(구조 및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 ①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응급의료종사자가 아닌 사람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구조 및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을 받도록 명할 수 있다.

1. 구급차등의 운전자
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자동차의 운전자
3. **「학교보건법」 제15조에 따른 보건교사**
4. 도로교통안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도로교통법」 제5조에 규정된 경찰공무원등
5. 「산업안전보건법」 제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의 대상자
6.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제10조에 따른 체육시설에서 의료·구호 또는 안전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7.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제22조에 따른 인명구조요원
8.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관광사업에 종사하는 사람 중 의료·구호 또는 안전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9. 「항공안전법」 제2조제14호 및 제17호에 따른 항공종사자 또는 객실승무원 중 의료·구호 또는 안전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10. 「철도안전법」 제2조제10호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철도종사자 중 의료·구호 또는 안전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11. 「선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선원 중 의료·구호 또는 안전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12.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13.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체육지도자
14. **「유아교육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교사**
15. 「영유아보육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보육교사

② 보건복지부장관 및 시·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4조제1항에 따른 응급처치 요령 등의 교육·홍보를 위한 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교육·홍보 계획의 수립 시 소방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시·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응급처치 요령 등의 교육·홍보를 실시한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구조 및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의 내용 및 실시방법, 보고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4) 최근 질병관리청이 개최한 '제9차 급성심장정지조사 심포지엄'에 따르면 심폐소생술 교육 등으로 인한 일반인에 의한 심폐소생술 시행률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며 이에 따른 생존율도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질병관리청, “제9차(2020년도) 급성심장정지조사 심포지엄”, 2020.12.9.)

- 이런 점에서 동 조례안이 학교에서 수행하는 응급처치교육을 지원하기 위해 지원계획 등의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규정한 것은 학교 등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응급사고에 대한 대응능력 향상 및 응급환자의 생명권과 건강권 보호에 기여할 수 있는바, 시의적절한 입법적 조치로 사료됩니다.

나. 조례안의 구성과 주요 조문별 검토

1) 조례안의 구성

- 동 조례안은 총 7개의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는 조례안의 목적, 정의, 교육감의 책무 등의 총칙 사항을 규정하고 있고, 안 제4조는 응급처치교육 지원계획 수립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는 교직원의 응급처치교육 연수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는 응급장비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동 조례안은 전체적인 구성이나 조문 체계, 내용 면에서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및 「자치법규 입안실무」 등에 따라 조문을 체계적으로 구성하고 있는바, 조례 제정에 따른 별도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되며,

서울특별시교육청도 동 조례안의 제정에 대해 별도의 의견이 없음을 밝힌바 있습니다(행정관리담당관-2275, 2021.2.17.).

- 일반인 심폐소생술 시행률 증가 추세
 - '19년 24.7%로 '06년에 비해 10배 이상 증가('08년 1.9% → '19년 24.7%)
 - 지역간 격차 증가('08년 2.5%p → '19년 26.2%p)
- 일반인 심폐소생술 시행 여부에 따른 생존율 : 시행함 15.0% > 시행하지 않음 6.2%
 - ※ 뇌기능 회복률 : 시행함 10.8% > 시행하지 않음 3.1%
- 심폐소생술 교육 경험
 - '12년 17% → '18년 32.6%

2) 지원계획의 수립(안 제4조)

- 안 제4조는 교육감으로 하여금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응급처치교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응급처치교육 지원의 추진 방향 및 목표, 응급처치교육의 홍보 및 예산확보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 “응급처치교육 지원에 관한 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러한 지원계획은 현행 「학교보건법」 제9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가 교육부장관 및 학교의 장에게 부여한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을 효과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조항으로 생각됩니다.
- 다만 이와 관련하여 서울특별시교육청은 「학교 안전교육 계획」 및 「학교보건 기본방향(학교 보건 분야)」를 통해 응급처치교육에 관한 사항과 학교 내 응급상황 관리체계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왔는바, 지원계획의 수립 역시 이러한 계획과 연관하여 실효성 있는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유념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3) 연수 등(안 제5조)

- 안 제5조 제1항은 교육감으로 하여금 교직원이 응급처치교육을 위해 충분한 연수 기회를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제2항은 교직원들이 교육감이 설치한 연수원 또는 의료기관 등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고, 같은 조 제3항에서는 교육감은 제2항에 따라 교육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안 제5조는 「학교보건법 시행규칙」 제10조제3항의⁵⁾ 교직원에 대

5) 「학교보건법 시행규칙」 제10조(응급처치교육 등) ③ 학교의 장은 공공기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제2조제2항의 연수원 중 교육감이 설치한 연수원 또는 의료기관에서 교직원으로 하여금 응급처치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소정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한 응급처치교육을 강화하기 위한 교육감의 지원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서 응급처치교육의 내실화를 위한 기본적 규정으로 생각됩니다.

[표2] 응급처치 교육 현황

1. 학교내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교육 추진 현황				
(단위:명)				
구분	2018년	2019년	2020년	비고
교직원 심폐소생술교육	90,405	92,147	실시유예	
2. 학교보건진흥원 교직원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교육 현황				
(단위:명)				
구분	2018년	2019년	2020년	비고
심폐소생술교육장 교육	3,555	2,124	187	
학교로 찾아가는 교직원 심폐소생술 교육	1,817	7,086	1,998	
합 계	5,372	9,210	2,185	
3. 심폐소생술 교육 관련 예산 현황				
(단위:명)				
연도	2018년	2019년	2020년	비고
예산액	74,625	74,454	94,579	자체예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내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교육 예산은 학교에서 자체 편성하여 집행 ▶ 학교보건진흥원 교직원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교육 예산 현황 				

4) 응급장비 지원(안 제6조)

○ 안 제6조는 교육감으로 하여금 학교에 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를 갖추는데 필요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현행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7조의2⁶⁾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26조의4는7) 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술을 위한 응급장비 설치 의무기관으로 학교를 규정하고 있지는 않으나, 응급처치교육의 확대를 위한 지원과 더불어 실제 응급상황에 대비한 응급장비의 지원 역시 필요하다는 점에서 꼭 필요한 규정으로 생각됩니다.8)

- 6)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7조의2(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의 구비 등의 의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등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1.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공공보건의료기관
 2.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제10조에 따른 구급대와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에서 운용 중인 구급차
 3. 「항공안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항공기 중 항공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여객 항공기 및 「공항시설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항
 4. 「철도산업발전 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철도차량 중 객차
 5. 「선박법」 제1조의2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선박 중 총톤수 20톤 이상인 선박
 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건축법」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
 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중이용시설
- ② 제1항에 따라 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를 갖춘 경우 해당 시설 등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그 사실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응급장비의 양도·폐기·이전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③ 제1항에 따라 응급장비를 설치한 자는 해당 응급장비를 매월 1회 이상 점검하여야 한다.
- ④ 제1항에 따라 갖추어야 하는 응급장비의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7)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의4(응급장비의 구비 의무가 있는 공동주택 등) ① 법 제47조의2 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란 500세대를 말한다.
- ② 법 제47조의2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중이용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철도역사(「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나목에 따른 광역철도 및 「도시철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도시철도 구간에 있는 철도역사는 제외한다)의 대합실 중 연면적이 2천제곱미터 이상이거나 전년도 일일 평균이용객수가 1만명 이상인 대합실
 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여객자동차터미널의 대합실 중 연면적이 2천제곱미터 이상이거나 전년도 일일 평균이용객수가 3천명 이상인 대합실
 3. 「항만법」 제2조제5호나목3)에 따른 대합실 중 연면적이 2천제곱미터 이상이거나 전년도 일일 평균이용객수가 1천명 이상인 대합실
 4. 「관광진흥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카지노 시설 중 영업장의 전용면적이 2천제곱미터 이상인 카지노 시설
 5. 「한국마사회법」 제4조에 따른 경마장
 6. 「경륜·경정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경주장
 7.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교도소, 소년교도소 및 구치소, 「출입국관리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외국인보호소,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년원
 8.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전문체육시설 중 총 관람석 수가 5천석 이상인 운동장 및 종합운동장
 9. 중앙행정기관의 청사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청사
 10. 시·도의 청사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청사
- 8) 현재 서울특별시교육청은 학교보건진흥원을 통해 희망 학교를 대상으로 심폐소생술에 필요한 교구를 대여하고 있으며, 서울시에서는 지난 2018년까지 서울 1,356교 중 1,351교에 자동심장충격기를 무상으로 보급한 바 있음.

[학교보건진흥원 실습 교구 현황]

순	모델명	수량(대)	비고
1	토루소(평가형)	2	실습용 심폐소생술 모형

[표3] 각급 학교별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현황

(단위:교)

학교급	학교수	설치교	미설치교	설치율
초등학교	602	599	3	99.5%
중학교	386	386	0	100%
고등학교	320	320	0	100%
특수학교	32	32	0	100%
각종학교	16	14	2	87.5%
합 계	1,356	1,351	5	설치율 99.1%

□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교육청 응급처치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	하트만	27	(90대)
3	써니	25	
4	누르고(평가형)	19	
5	리틀애니(평가형)	5	
6	영아 마네킨	12	
7	알리고	20	교육용 자동심장충격기
8	프레스탄	35	(55대)
9	액트	10	성인 기도폐쇄 실습 모형
합계		155	

[붙임]

학교보건법 시행규칙 [별표9]

응급처치교육의 계획·내용 및 시간 등(제10조제1항 관련)

1. 응급처치교육의 계획 수립 및 주기

- 가. 학교의 장은 매 학년도 3월 31일까지 응급처치교육의 대상·내용·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 해당 학년도의 응급처치교육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 나. 학교의 장은 교육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모든 교직원이 매 학년도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다만, 해당 학년도에 다른 법령에 따라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와 관련된 내용이 포함된 교육을 받은 교직원에 대해서는 응급처치교육을 면제할 수 있다.

2. 응급처치교육의 내용·시간 및 강사

내용		시간	강사
가. 이론 교육	1) 응급상황 대처요령 2)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시 주의사항 3) 응급의료 관련 법령	2시간	가) 의사(응급의학과 전문의를 우선 고려해야 한다) 나) 간호사(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와 관련된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 한정한다) 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응급구조사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응급의료 또는 구조·구급 관련 분야(응급처치교육 강사 경력을 포함한다)에서 5년 이상 종사하고 있는 사람
나. 실습 교육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2시간	

비고

- 1. 교육 여건 등을 고려하여 응급처치교육의 내용·시간을 조정할 수 있으나 실습교육 2시간을 포함하여 최소 3시간 이상을 실시해야 한다.
- 2. 심폐소생술에 대한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을 실습교육을 위한 보조강사로 할 수 있다.

관계 법령

학교보건법

[시행 2020. 10. 20.] [법률 제17497호, 2020. 10. 20., 일부개정]

- 제9조의2(보건교육 등)** ① 교육부장관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모든 학생들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을 포함한 보건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건교육의 실시 시간, 도서 등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한다.
- ②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의 장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장은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교직원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③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의 장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과 연관된 프로그램의 운영 등을 관련 전문기관·단체 또는 전문가에게 위탁할 수 있다.

학교보건법 시행규칙

[시행 2019. 10. 24.] [교육부령 제194호, 2019. 10. 24., 일부개정]

- 제10조(응급처치교육 등)** ① 학교의 장이 법 제9조의2제2항에 따라 교직원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이하 "응급처치교육"이라 한다)을 실시하는 경우 응급처치교육의 계획·내용 및 시간 등은 별표 9와 같다.
- ② 학교의 장은 응급처치교육을 실시한 후 해당 학년도의 교육 결과를 다음 학년도가 시작되기 30일 전까지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③ 학교의 장은 공공기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제2조제2항의 연수원 중 교육감이 설치한 연수원 또는 의료기관에서 교직원으로 하여금 응급처치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소정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 2021. 1. 1.] [법률 제17689호, 2020. 12. 22., 타법개정]

- 제47조의2(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의 구비 등의 의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시설 등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1.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공공보건의료기관
 2.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구급대와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에서 운용 중인 구급차
 3. 「항공안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항공기 중 항공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여객 항공기 및 「공항시설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항
 4. 「철도산업발전 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철도차량 중 객차
 5. 「선박법」 제1조의2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선박 중 총톤수 20톤 이상인 선박
 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건축법」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
 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중이용시설
- ② 제1항에 따라 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를 갖춘 경우 해당 시설 등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그 사실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응급장비의 양도·폐기·이전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③ 제1항에 따라 응급장비를 설치한 자는 해당 응급장비를 매월 1회 이상 점검하여야 한다.
- ④ 제1항에 따라 갖추어야 하는 응급장비의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1. 1. 5.] [대통령령 제31380호, 2021. 1. 5., 타법개정]

제26조의4(응급장비의 구비의무가 있는 공동주택 등) ① 법 제47조의2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란 500세대를 말한다.

- ② 법 제47조의2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중이용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철도역사(「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나목에 따른 광역철도 및 「도시철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도시철도 구간에 있는 철도역사는 제외한다)의 대합실 중 연면적이 2천제곱미터 이상이거나 전년도 일일 평균이용객수가 1만명 이상인 대합실
 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여객자동차터미널의 대합실 중 연면적이 2천제곱미터 이상이거나 전년도 일일 평균이용객수가 3천명 이상인 대합실
 3. 「항만법」 제2조제5호나목3)에 따른 대합실 중 연면적이 2천제곱미터 이상이거나 전년도 일일 평균이용객수가 1천명 이상인 대합실
 4. 「관광진흥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카지노 시설 중 영업장의 전용면적이 2천제곱미터 이상인 카지노 시설

5. 「한국마사회법」 제4조에 따른 경마장
6. 「경륜·경정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경주장
7.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교도소, 소년교도소 및 구치소, 「출입국관리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외국인보호소,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년원
8.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전문체육시설 중 총 관람석 수가 5천석 이상인 운동장 및 종합운동장
9. 중앙행정기관의 청사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청사
10. 시·도의 청사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청사